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80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황주홍 · 이양수 · 윤준호

김성찬 · 오영훈 · 박주현

김태흠 · 박완주 · 손혜원

손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항 제10호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부착 또는”을 “붙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착할”을 “붙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각각 “붙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착된”을 “붙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한다.

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5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착된”을 “붙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착되어”를 “붙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
여야”로 한다.

제19조제14호 중 “축산정책상”을 “축산정책을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10호 중 “축산정책상”을 “축산정책을 위하여”로 한다.

제32조 제2항 제8호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 중 “부착하지”를 각각 “붙이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 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
할 소나 종돈

2. (생략)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
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
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
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동 등 금지) ① _____

불여진 _____

② _____

1. 붙어

2. (현행과 같음)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
축금지) ① -----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 ----- ----- ----- ----- ----- ----- ----- -----.</p>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p>10. 그 밖에 <u>축산정책상</u>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10. -----<u>축산정책을 위하여</u>----- ----- -----</p>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 ----- -----.</p>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p>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u>부착하지</u>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8. ----- ----- <u>붙이지</u>----- ----- -----</p>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u>부착하지</u> 아니한 자	4. ----- ----- <u>붙이지</u> -----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u>부착하지</u> 아니한 자	13. ----- ----- <u>붙이지</u> ----- ---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